

도시계획시설 변경(공공공지 →공원)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

2008. 9. 1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. 8. 2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8. 8. 25.
- 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8. 9. 1)
상정, 심사, 원안채택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성경호 녹지환경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마을마당 및 소규모공원이 조성된 현황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현황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결정 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나. 주요요지

- 대상지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39-21일대외 5개소
 - 시행면적 : 10,794㎡
 - 시설의 종류 : 공공공지
- 도시계획시설 변경 : 공공공지 → 공원
-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
 - 2004 ~ 2005 :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 조성
 - 2008.1.31 ~ 2.14 :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안) 열람공고
 - ※ 의견사항 : 없음
 - 2008. 9 :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(예정)

다. 입안내용

○ 대상지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39-21일대외 5개소
- 시행면적 : 10,794㎡

○ 변경 내용

공 원 명 (위치)	시설의 종류			면 적 (㎡)	도시계획시설 결정일 (공공공지)	공원 조성 년도
	당 초	변 경				
		시설명	세분류			
계(6개소)				10,794		
양화진공원 (합정동 139-21일대)	공공공지	공원	주제공원 (역사공원)	4,380	-최초:01.11.24 (마포구 고시 제2001-121호) -최종:02.7.22 (마포구 고시 제2002-61호)	'04
양화진공원 (합정동 142-9)	공공공지	공원	주제공원 (역사공원)	424	-최초:04.5.25 (마포구 고시 제2004-41호) -최종:05.12.29 (마포구 고시 제2005-122호)	'05
현석동마을마당 (현석동 1-5번지)	공공공지	공원	생활권공원 (어린이공원)	1,622	03.9.5 (마포구 고시제2003-82호)	'04
서강나루공원 (창전동165-5일대)	공공공지	공원	주제공원 (문화공원)	2,429	-최초:03.10.15 (마포구 고시 제2003-91호) -최종:04.11.30 (마포구 고시 제2004-125호)	'05
밤섬공원 (신정동76-1번지)	공공공지	공원	주제공원 (문화공원)	1,638	04.5.25 (마포구 고시 제2004-41호)	'05
당인동마을숲 (당인동27-9번지)	공공공지	공원	주제공원 (문화공원)	301	04.5.25 (마포구 고시 제2004-41호)	'04

※ 도시계획선 변경 없음

○ 변경사유

- 도시계획시설을 변경(공공공지 → 공원)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지역은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 현황이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관리에 필요한 법률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현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을 받고 있는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에서도 배재되고 있어,

- 체계적인 공원관리에 부합되지 않고 공원내 기초질서 위반행위(애완 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)등에 대한 계도단속 등이 불가, 이용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는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(공공공지 → 공원)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자 함.

○ 환경성 검토결과

- 대상지는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현황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(공공공지 → 공원) 하는 사항으로 현재와 미래 토지이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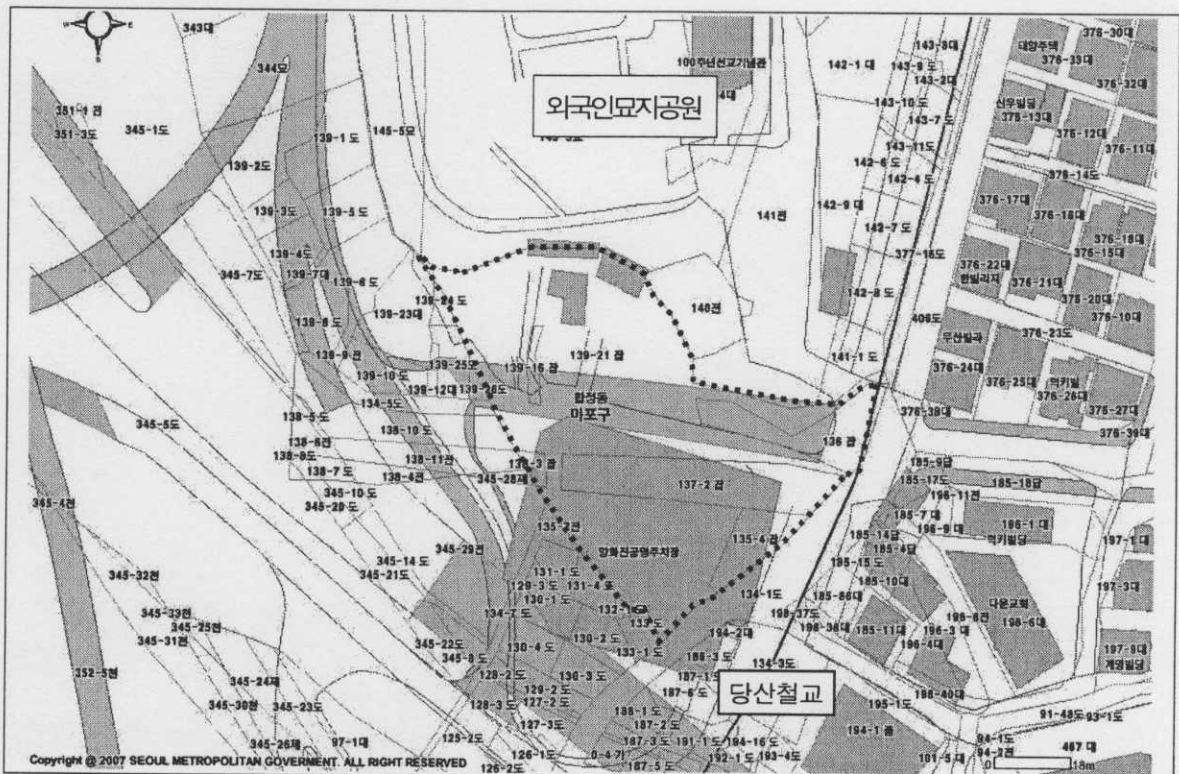
○ 기 타

- 공람 ·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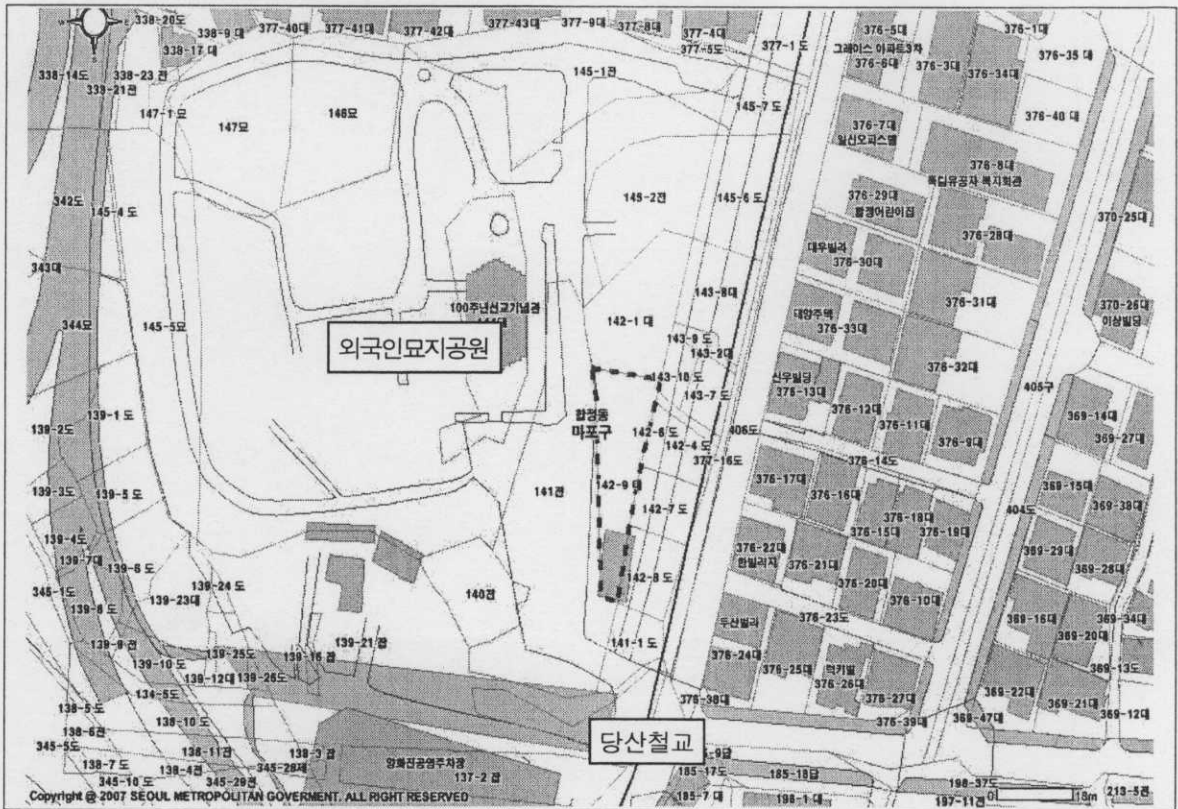
- 사업의 명칭 :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안)
- 게재방법 : 구보 및 인터넷 게재
- 공람기간 : 2008. 1. 31 ~ 2008. 2. 14(14일)

라.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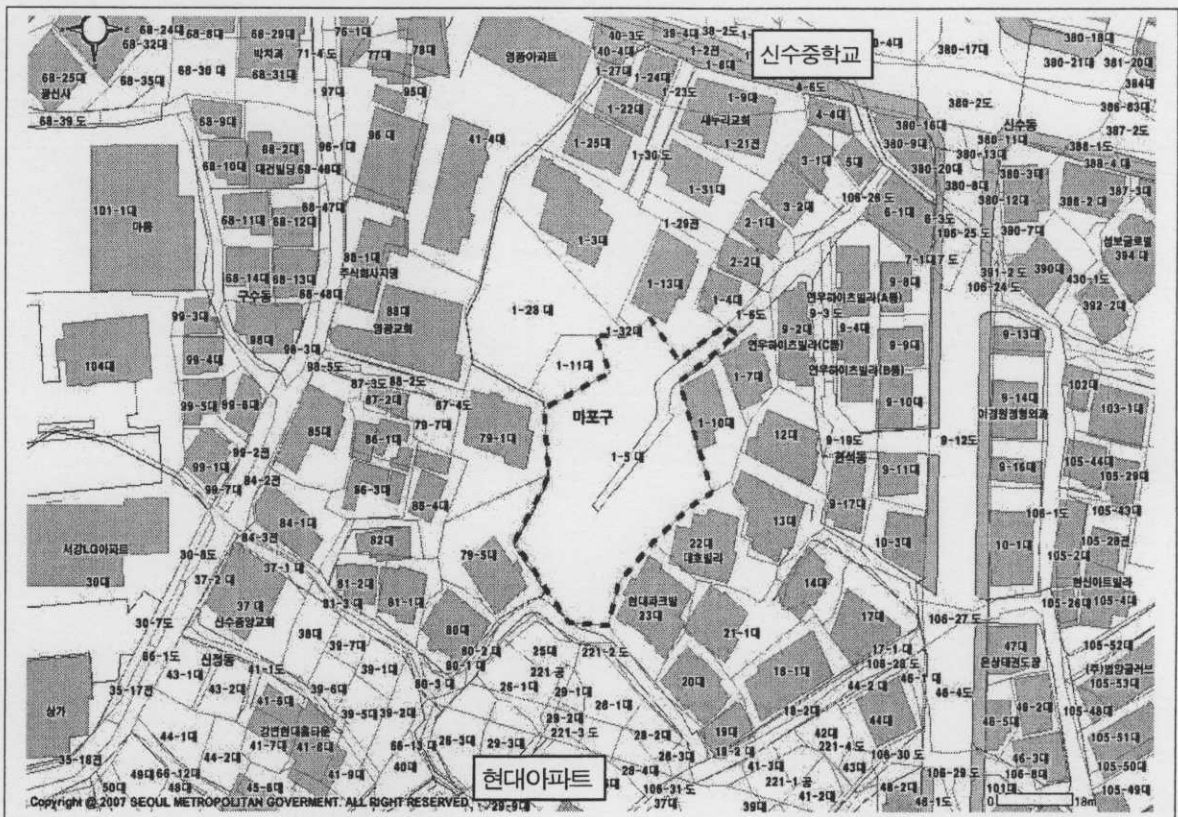
○ 양화진공원 - 합정동 139-21일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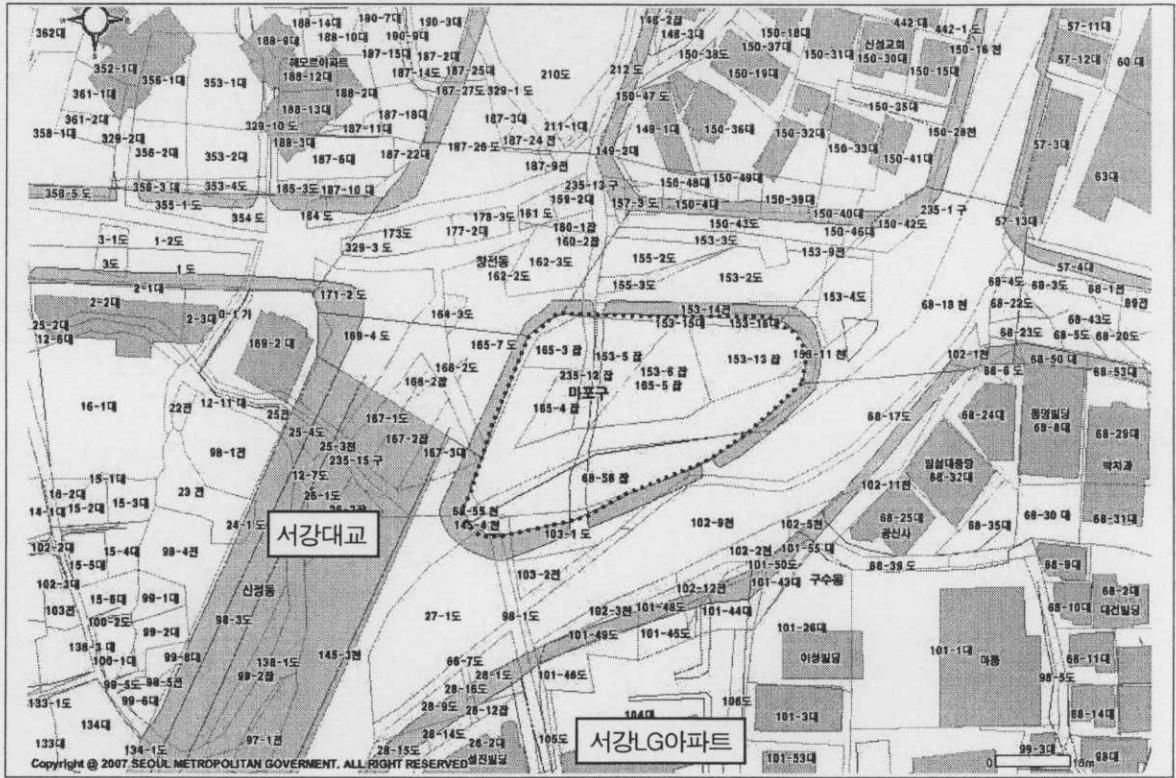
○ 양화진공원(외국인 묘지공원 전면) - 합정동 142-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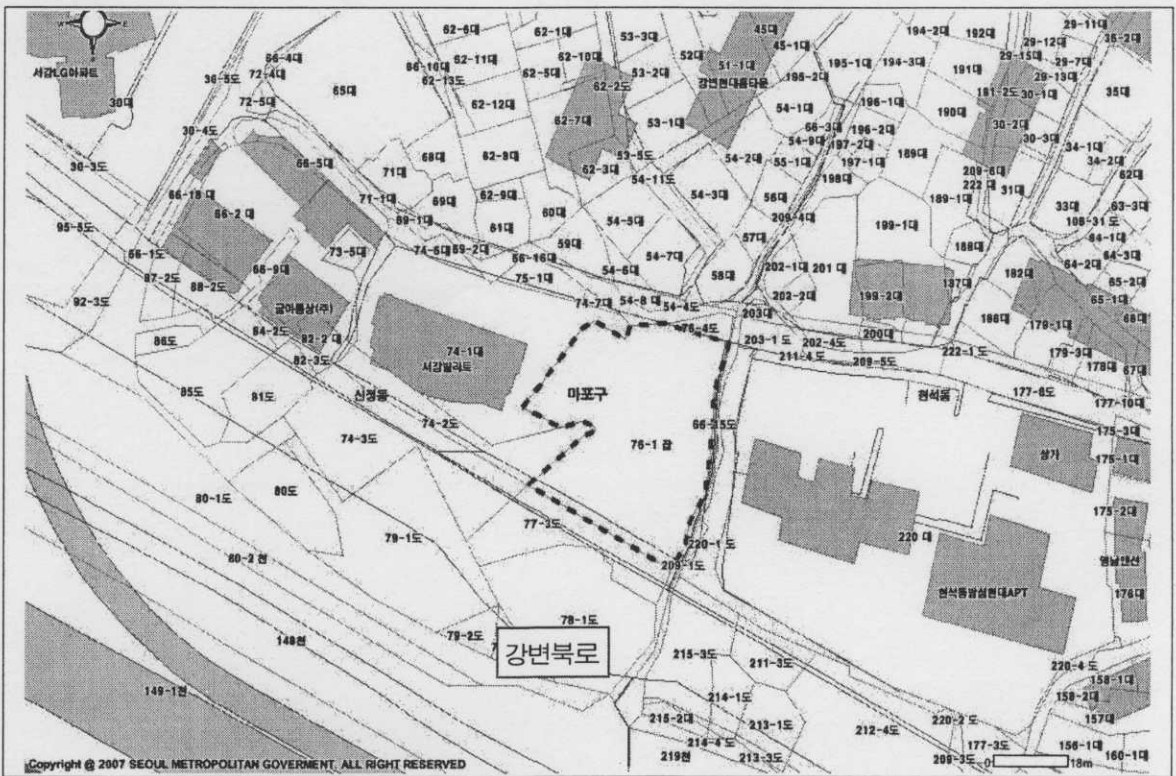
○ 현석동 마을마당 - 현석동 1-5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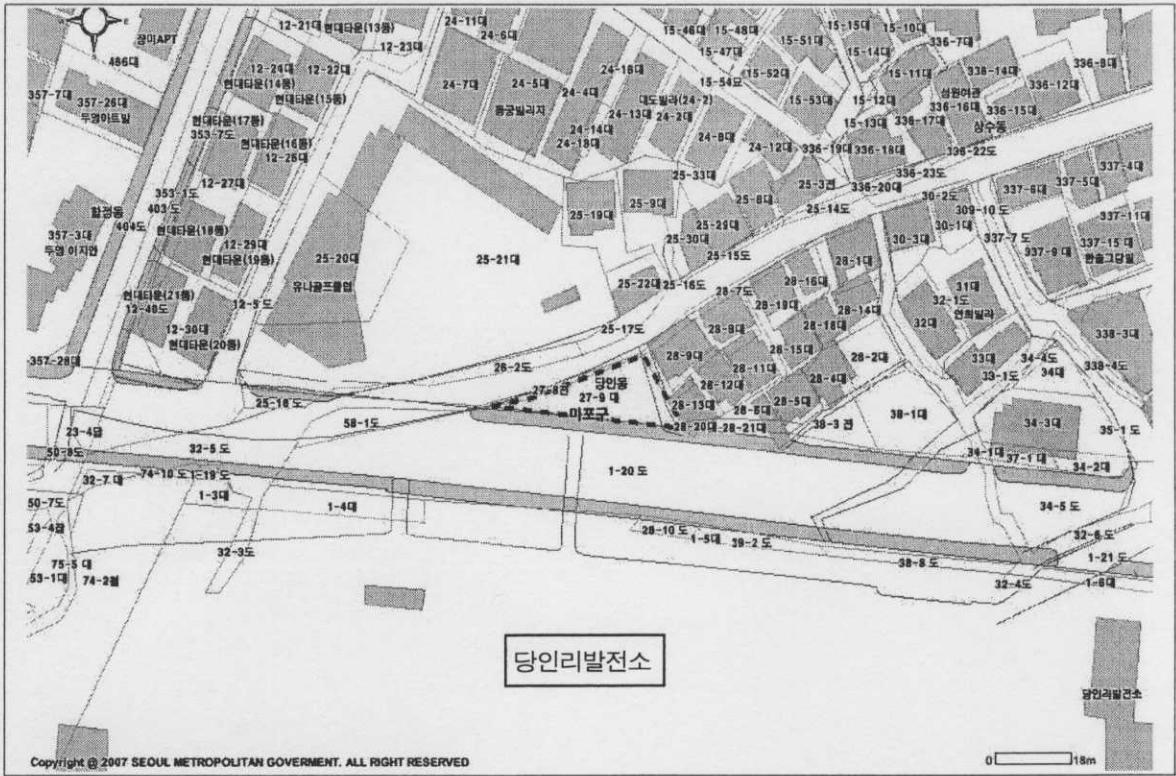
○ 서강나루 공원 - 향전동 165-5번지 일대



○ 밤성공원 - 신정동 76-1번지



○ 당인동 마을숲 - 당인동 27-9번지



3. 검토보고의 요지 (한두호 전문위원)

- 본 대상지는 양화진공원(합정동139-21)외 5개소 10,794㎡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 현황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하고자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추진경위를 보면 본 건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 곳으로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변경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2008.1.31 ~ 2.14까지 열람하였으나, 접수된 의견은 없음.

- 주요 변경 입안내용은 본대상지는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 현황이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된 상태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보면 “도시공원은 공원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·관리한다” 라고 규정되어 있고,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을 보면 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에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곳에 쾌적한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업무편람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공원이 조성되어야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 .